

학생생활상담센터 운영 규정

제정 : 2013. 03. 01.

개정 : 2015. 02. 06.

개정 : 2018. 04. 06.

개정 : 2021. 02. 05.

담당 : 학생생활상담센터(950-4317)

----- 목 차 -----

제1조(목적)	제2조(명칭)	제3조(사업)	제4조(조직)
제5조(센터장)	제6조(상담원)	제7조(수련생)	제8조(직원)
제9조(구성)	제10조(기능)	제11조(권리 및 정보 관리)	제12조(재정)
제13조	제14조	제15조(운영세칙)	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학생생활상담센터의 조직, 운영, 학생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1.02.05)

제2조(명칭) 본 센터는 학생생활상담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라 칭한다.(개정15. 02. 06)(개정 21.02.05)

제3조(사업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관장한다.(개정 21.02.05)

1. 상담 및 진로 프로그램 운영(개정 21.02.05)
 - 가. 진로·심리검사 및 해석상담
 - 나. 개인 및 집단 상담
 - 다. 진로탐색 및 심리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 - 라. 기타 상담에 관련된 활동
2.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관리(신설 21.02.05)
 - 가. 자살 예방 교육 및 상담, 위기상황 지원
 - 나. 성희롱·성폭력 예방 교육, 상담 및 위기상황 지원
 - 다.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성과 보고
3. 교육 및 연구(개정 21.02.05)

- 가. 학생상황에 따른 상담, 지도, 교육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 및 연구
- 나. 정신건강세미나
- 다. 상담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수련 활동(신설21.02.05)
- 라.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보고서 및 연구지 발간

제2장 조직

제4조(조직) 센터에는 센터장, 전임상담원, 상담원, 시간제상담원, 수련생 및 직원을 둘 수 있다.(개정 15.2.6)(개정 21.02.05)

제5조(센터장) ① 센터장은 센터 운영과 업무를 총괄한다.(개정15.2.6)(개정 21.02.05)
 ② 센터장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조교수이상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(개정15.2.6)(개정 21.02.05)

제6조(상담원) ① 전임상담원은 상담 또는 임상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취득하고 상담심리사 1급 또는 임상상담심리사 1·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,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.(개정 15.2.6)(개정 21.02.05)
 ② 상담원은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하고 상담심리사 2급 또는 임상상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, 자격증 취득 후 1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.(개정15.2.6)(개정 21.02.05)
 ③ 시간제 상담원은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하고 상담심리사 2급 또는 임상상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한다.(신설 21.02.05)

제7조(수련생) ① 센터에 레지던트 및 인턴 수련생을 둘 수 있다.(개정 21.02.05)
 ② 레지던트는 상담관련전공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로 한다.(개정 21.02.05)
 ③ 인턴은 상담관련전공 분야 석사 1학기 수료 이상자로 한다.(개정 21.02.05)
 ④ 레지던트에게는 상담사례별로 사례비 혹은 연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(개정 21.02.05)

제8조(직원) 직원은 센터 운영에 관한 제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.(개정15.2.6)(개정 21.02.05)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9조(구성) ① 본 센터 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를 둔다.(개정 15.2.6)(개정 21.02.05)
 ② 센터장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.(개정 21.02.05)
 ③ 위원회는 센터장을 포함한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(개정 21.02.05)
 ④ 위원은 교목실장, 교학처장, 교수학습센터장, 취창업지원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그 밖의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.(개정 21.02.05)
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보직의 임기만료 시 해지되며, 이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(개정 21.02.05)
 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으로써 성립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다만,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(개정15.2.6)(개정 21.02.05)

제10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(개정15.2.6)(개정 21.02.05)

- 가. 센터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(개정15.2.6)(개정 21.02.05)
- 나. 센터의 사업성과 및 환류에 관한 사항(개정15.2.6)(개정 21.02.05)
- 다. 각 센터 사업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(개정15.2.6)(개정 21.02.05)
- 라.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(개정15.2.6)(개정 21.02.05)

제4장 권리 및 정보관리

제11조(권리 및 정보 관리) ① 센터 이용자는 비밀유지를 기대할 권리, 상담 참여 여부를 선택할 권리, 자신의 사례 기록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, 상담 계획에 참여할 권리, 어떤 서비스를 거절할 권리 및 그 거절에 따른 결과에 대한 조언을 받을 권리가 있다.(개정15.2.6)(개정 21.02.05)

② 센터 이용자는 사생활과 비밀에 대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. 다만, 센터 이용자 본인 및 타인의 생명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 될 경우 이용자의 동의 없이 상담관련 정보를 전문인이나 관련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.(개정15.2.6)(개정 21.02.05)

③ 개인 상담과 관련된 제반 기록(면접기록, 검사기록, tape, video tape, 편지 등)은 내담자의 졸업시점에 폐기하며, 심리검사 해석은 검사를 시행한 학기를 기준으로 3년간 보관 후 파기한다. 온라인 검사는 5년간 보관 후 파기 한다.(개정15.2.6)(개정18.4.6)(개정21.02.05)

④ 센터는 이용자가 기록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할 경우 응한다. 다만, 이용자와 관련된 타인의 사적인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.(개정15.2.6)(개정 21.02.05)

⑤ 센터는 업무에 지장을 주는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(신설 21.02.05)

제5장 재정

제12조(재정) 센터의 예·결산에 관한 사항은 본교의 회계규칙에 따른다.(개정 21.02.05)

제13조 삭제

제14조 삭제

제15조(운영세칙)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3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5년 02월 0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8년 04월 0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21년 02월 05일부터 시행한다.